

#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

제정 2012.02.1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5호  
일부개정 2012.04.0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 7호  
일부개정 2012.08.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2호  
일부개정 2013.01.1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2호  
일부개정 2014.01.2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 2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기업을 효율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건강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관리”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업건강 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이란 기술 또는 경영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가 기술, 산업, 핵심역량, 경영성과 등 기업경영 전반에 관해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위기관리 역량의 저해요인 또는 기업성장통의 원인을 도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처방전 발급”이란 제5조에 따른 기업건강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이하 “처방전”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는 활동을 말한다.
4. “맞춤형 치유”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처방전’에 따라 하나 또는 다수의 지원기관이 진단기업의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중소기업 건강관리 운영체계

**제3조(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①중소기업의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은 ‘진단’, ‘처방전 발급’, ‘맞춤형 치유’의 3단계로 운영된다.

②시스템의 단계별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진단 착수일 : 진단 신청·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2. 처방전 발급일 : 진단 신청·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
3. 처방전 추천일 : 진단 신청·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③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진단 신청·접수한 날은 진단 신청·접수를 마감한 날로 본다.

④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단 신청기업에 유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①중소기업 건강관리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관할 지역 중소기업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추천에 관한 사항
3. 진단기업의 자체 치유과제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에 따른 맞춤형 치유사업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소기업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지역본(지)부장
2.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영업본부장 또는 영업점장
3.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기술평가센터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
5. 중소기업중앙회 지회장
6.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역지사장
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본부장 또는 소장
8. 지방청 건강관리 업무 담당 과장
9. 중소기업 건강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장이 정하는 자

④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해 지방청에 사무국(이하 “기업 건강관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⑤위원회 개최, 위원의 임기, 안전의 심의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진단기관)** 진단과 처방전 발급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진단기관으로 한다.

1. 지방청
2. 중진공 지역본(지)부
3. 신보 영업점
4. 기보 본부평가센터 또는 기술평가센터

**제5조의2(공동진단기관)** 분야별 진단과 처방전 발급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공동진단기관으로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기관
2. 지역신용보증재단
3.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
4. 기타 분야별 진단과 처방전 발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장 시스템 단계별 처리내용

#### 제1절(진단 실시)

**제6조(신청대상)** ①진단신청일 현재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 제2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진단신청 제한 대상 기업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1호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기관에 상담·신청할 수 있다.

②진단기관은 위기관리 역량이 현저히 떨어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진단 실시)** ①진단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가 1인 또는 2인이 진단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진단기관은 내부 인력 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5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진단기관은 제5조 제2호 진단기관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신청 기업의 업종, 생산품 및 보유기술, 애로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④진단 실시 일수는 최대 6 Man-Day(이하 “MD”라 한다)를 원칙으로 하며, 진단 실시 일수는 별표 제2호와 같다. 제10조에 따른 진단보고서 작성일은 1MD에 포함할 수 있다.

⑤진단비용은 30만원/1MD으로 한다. 3MD 이내는 진단기관별 진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단기관이 부담하고, 4MD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 신청 기업이 초과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공동진단 실시)** ①진단기관은 진단과정에서 공동진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동진단기관은 자체 조사 또는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심사 인력을 파견하여 공동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동진단은 제8조 제4항에 따른 진단 실시 일수(MD)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동진단 실시 비용은 공동진단기관의 자체비용으로 한다.

④진단기관은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동진단기관은 그 결과를 공동진단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단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2절(진단기관 처방전 발급)

**제10조(진단보고서 작성)** ①진단기관 또는 전문가는 중진공의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 진단보고서 PT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전문가 평가 실시)** ①진단기관은 전문가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직후에는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가 평가결과는 우수 전문가 선정 및 불성실 전문가 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처방전 작성·발급)** ①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와 제12조에 따른 ‘건강관리 처방 매뉴얼’을 참조하여 별지 제2호의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을 작성하여야 한다. 처방전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기업 건강진단 결과 요약서
2.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내역(맞춤형 치유사업 또는 진단기업의 자체 치유과제 수에 맞게 처방내역 작성)

②진단기관은 내부결재를 거쳐 처방전을 발급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소관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처방전 매뉴얼)** 중소기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진단기관의 원활한 처방전 발급을 위하여 「건강관리 처방 매뉴얼」을 작성하여 진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 제3절(진단기업 맞춤형 치유)

**제13조(처방전 심의)** ①기업건강관리팀은 처방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심의·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단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원안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2. 처방전 중 잘못된 처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하거나, 추가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사업의 추가를 의결할 수 있다.
  3.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치유사업(맞춤형 치유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치유 완료일이 늦은 맞춤형 치유사업을 말한다)의 완료 기한 내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선권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치유과제의 선행 개선조건부 맞춤형 치유사업을 의결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처방전에 대한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해 진단기관 담당자, 전문가, 진단기업 관계자의 위원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중소기업 사업전환에 대한 특례)** ①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된 사업전환 처방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0조에 따른 지방청장의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8조에 따른 진단 및 타당성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요령 제8조에 따른 진단실시를 생략하고, 처방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추천서 송부)** ①기업건강관리팀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별지 제5호의 「중소기업 건강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는 별지 제3호의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지원기관에는 별지 제4호의 「추천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업건강관리팀은 진단기업에 추천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치유사업, 참여절차, 신청서식 및 유효기한,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건강관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맞춤형 치유)** ①진단기업은 맞춤형 치유사업의 유효기간 내에 추천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맞춤형 치유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은 진단기업이 제출한 추천서를 근거로 맞춤형 치유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지원기관이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업이 직접 또는 진단기관(사전에 진단기업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원기관은 맞춤형 치유사업 지원 실적(전월말 기준)을 매월 10일 까지 기업건강관리팀에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기업건강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업무와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결 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진단기업이 추천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맞춤형 치유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리
2.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자체 치유과제의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
3. 진단기업 애로사항 및 치유사업 조사·보고(진단기관에서 조사한 애로사항 및 치유사업 포함)
4. 진단기업의 성과점검을 3년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5. 공장설립, 노무, 보건·위생, 세무, 소방, 환경, 법무 등 기업현장 애로사항 동행해결 지원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진단기업에 대한 맞춤형 치유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추가 추천하거나, 진단기관 또는 공동진단기관에 처방전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진단기업에 대해서는 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에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구조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특례)** 청장은 구조적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진단신청 및 접수, 진단 실시, 처방전 발급, 맞춤형 치유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7조(사업관리비 지급)** 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진단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청장은 중소기업 건강관리 성과가 우수한 진단기관 임직원, 전문가, 지원기관 임직원에 대해 포상, 인센티브 지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위원회, 진단기관, 지원기관, 전문가 또는

기업건강관리팀(이하 “관계자”라 한다)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진단기업의 비밀을 공포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진단기업은 관계자가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③진단기업은 관계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진단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진단기업은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 개선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업건강관리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지침의 제정 등)** ①청장은 중소기업 건강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진단기관은 이 요령 및 운영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존속기한)** 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존속기한은 2015년 4월 5일까지로 한다.

②제5조의2제3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환경·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한은 2015년 4월 5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진단 신청 제한 대상

1.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치유를 받은 횟수가 4회 이상인 기업. 단, 처방전 추가 발급·추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한다.
2.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변경 등 진단기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진단기관에서 진단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그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휴·폐업중인 기업
5.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회생인가 받은 기업 및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한다.
6.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한다.
7.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 진단 신청일 현재,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단, 진단기관이 해당기업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나.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다.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별표 제2호】

상시 근로자수별 진단 실시 일수

진단신청 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2MD	3MD	4MD	5~6MD
제조업(C) <sup>1</sup> · 광업(B) · 운수업(H) <sup>2</sup> 도매 및 소매업(G) <sup>3</sup>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sup>4</su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sup>5</sup>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5인 이상 ~ 10인 미만	10인 이상 ~ 30인 미만	30인 이상 ~ 50인 미만	50인 이상

- 1] 제조업(C)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진단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운수업(H)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은 진단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3] 도매 및 소매업(G)중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은 진단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은 진단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중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은 진단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업명) 건강진단 결과 요약서

### 1 진단기업 현황

기업명	설립일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표준산업분류	주생산품목		
* 최근 3년간 기업경영성과 요약 (단위 : 백만원)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2010년			
2011년			
2012년			
	자산총액	자본총계	부채총계

### 2 건강진단 결과(S/W/O/T-S/R)

기술 및 산업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기회 [O]		강점 [S]		건전 [S]	
위협 [T]		약점 [W]		위험 [R]	

### 4 기업성장 로드맵 및 개선방향

[붙임 2]

## (기업명) 건강관리 처방내역

처 방 1	자금	보증	R&D/ 정보화	국내 마케팅	국외 마케팅	기술경영 지원	인력/연수	사업전환/ M&A	개선 권고
	치 사 유								
치 유 내 용									
처 방 2	자금	보증	R&D/ 정보화	국내 마케팅	국외 마케팅	기술경영 지원	인력/연수	사업전환/ M&A	개선 권고
	치 사 유								
치 유 내 용									





## 중소기업 건강관리 대장

구분	추천서 송부일 (담당자)	추천 내용	자금			보증			R&D/정보화			국내 마케팅			
			완료	진행중	미착수	완료	진행중	미착수	완료	진행중	미착수	완료	진행중	미착수	
			완료일	신청일	지원 기관	완료일	신청일	지원 기관	완료일	신청일	지원 기관	완료일	신청일	지원 기관	
기업명 (진단관리번호)															

국외 마케팅			기술·경영지원			인력/연수			사업전환/M&A			자체개선			비고
완료	진행중	미착수	완료	진행중	미착수	완료	진행중	미착수	완료	진행중	미착수	완료	진행중	미착수	
완료일	신청일	지원기관	완료일	신청일	지원기관	완료일	신청일	지원기관	완료일	신청일	지원기관	완료일	신청일	지원기관	